## 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<u>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</u> (제16조 관련)

구분	특정소방대상물	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
		소방시설
1. 화재 위험도가 낮은	석재, 불연성금속, 불연성	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
특정소방대상물	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・	由]
	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	
	물품을 저장하는 창고	
2. 화재안전기준을 적용	펄프공장의 작업장, 음료수	스프링클러설비, 상수도소
하기 어려운 특정소방	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	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
대상물	하는 작업장, 그 밖에 이와	用
	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	
	것	
	정수장, 수영장, 목욕장, 농	자동화재탐지설비, 상수도
	예・축산・어류양식용 시	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
	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	설비
	도로 사용되는 것	
3. 화재안전기준을 달리	원자력발전소, 중·저준위	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
적용해야 하는 특수한	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	수설비
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		
특정소방대상물		
4. 「위험물 안전관리	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	옥내소화전설비, 소화용수
법」 제19조에 따른 자	소등에 부속된 사무실	설비, 연결살수설비 및 연
체소방대가 설치된 특		결송수관설비
정소방대상물		